#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C-RA, BLB, JEA, JEA-RA, JEA-RB, JEA-RC, JEA-RE, JFA-RA, JOA-RA, KLA-RA
**책임 사무소:**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 노숙자/홈리스 경험 학생 등록
## Enrollment of Students Experiencing Homelessness

**I. 목적**

각 노숙/홈리스를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공립 프리스쿨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방과 주법을 적용합니다.

노숙/홈리스를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모든 학생에게 있는 동일한 도전적 주 학생 학업 성취 기준 충족에 필요한 교육과 기타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법의 기대를 확실히 합니다.

고정된 정규의 적절한 야간 거주가 없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다닐 자격이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등록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이동성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지불 수수료, 벌금 또는 결석으로 인한 등록 및 유지에 대한 장벽을 포함하여 노숙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파악과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등록, 유지 및 학교 이수에 대한 장벽을 제거합니다.

**II. 이슈**

연방법은 노숙 생활을 겪는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합니다.

A. 1987 년 연방 *맥키니-벤토(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 1987 년 (*McKinney-Vento* 또는 MKV)은 노숙 생활을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와 서비스 제공합니다:

1.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즉시 학교에 등록. 이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아래 정의)이 즉시 등록하기 위해 후견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2. 원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권리. (아래에서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를 포함하도록 정의됨).

3. 원래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 제공.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과외 활동이 학생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 MKV 자격이 있는 학생도 교통편을 이용.

4. 무료 및 할인 급식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

5. Title I 서비스, 음식 및 영양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지역 서비스를 포함하여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6. 메그넷 프로그램, 여름학교, 직업 및 기술 교육, 강화 및 가속 교육, 온라인 학습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자격이 있는 모든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접근 및 참여.

7.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및 영어 개발 프로그램 및 자격을 갖춘 서비스.

B.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Unaccompanied Homeless Youth)을 위한 지원 서비스*

1. MKV 는 학교 등록, 적격한 서비스 이용 및 학교에서의 성공에 있어 독특한 장벽에 자주 직면하는 보호자 없는 노숙 청소년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옹호하고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부모/후견인/보호자가 없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장기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하지 못하거나 전혀 졸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IDEA 의 파트 B 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보호자가 없는 홈리스 청소년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 부모가 임명될 때까지 비상 보호소, 임시 보호소, 자립 생활 프로그램 및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의 적절한 담당 직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해당 IDEA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 부모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 대리 부모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C. *분쟁 해결*: *McKinney-Vento 법은* 부모/후견인/보호자 및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에게 자격, 등록 또는 학교 선택에 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해결 기간 동안 학생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입학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D. *자격 확인*: 학생의 MKV 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구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구는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합리적이고 재량과 민감성에 근거하고 가족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III. 정의

A. *최선의 이익 결정(Best-Interest Determination*-BID)은 노숙 생활을 겪고 있는 학생이 다닐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MKV 는 학교가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MKV 적격 학생이 계속 다니도록 하는 것이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 학생의 요청에 반하지 않는 한, 학생을 학생의 원래 학교에 유지하는 것이 학생에게 최선으로 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BID 회의는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적격 학생이 등록을 원하는 학교와 MCPS 가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 학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항목 IV.C. 참조

1. *학생의 원래 학교(School of origin)*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a) 학생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당시 다니던 학교, 또는

   b) 학생의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

2. 학생이 *원래 학교(School of origin)*에서 최종 학년을 마친 경우, 원래 학교의 다음 진학 학교(designated receiving/feeder school)가 원래 학교에 포함됩니다.

3. *지역 출석 학교(Local attendance area school)* 학생의 임시 주택 주소에 해당하는 지역 학교를 의미합니다.

B. *아동(Child)/청소년(youth)*은 공립학교 또는 Maryland 내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며 이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프리킨더가든부터 12 학년

2. Head Start 또는 Even Start

3. 장애가 있는 신생아와 영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Child Find)을 포함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4. 기타 프로그램

C. *맥키니-벤토 법(McKinney-Vento Act-MKV) 자격을 갖춘 학생*이란 자격을 갖춘 학생은 고정되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하여 임시 거주지가 Montgomery 카운티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MCPS 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아동과 청소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집이 없어지거나 경제적 이유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른 사람과 주택을 공유하는 것

   b) 대체 또는 적절한 대체 거주공간이 없어서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 거주

   c)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에 거주 [1]

   d) 병원에 방치 또는 유기된 경우

2. 주요 야간 거주지가 다음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

   a)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빈 건물, 버스 또는 전철역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간과 같은 인간을 위한 정기적인 수면 시설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개인 장소; 또는

   b) 가족, 아동 또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환경에 수도, 전기 또는 난방과 같은 기본 공공시설 중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환경; 해충이나 곰팡이에 감염되어 있는 환경; 작동하여 사용할 수

[1]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위탁양육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은 노숙/홈리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탁양육인 학생에 관한 정보는 Board Policy JEA, *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 MCPS Regulation JEA-RB, *Enrollment Students*; Regulation JEA-RE, *Tuition-based Enrollment*;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를 봅시다.

있는 주방이나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환경; 또는 성인, 어린이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게 위험한 환경

3. 위에 묘사한 상황 중 하나에 농업 이주 노동자인 부모/후견인/보호자와 거주하는 아동; 또는

4. *보호자가 없는 노숙/홈리스 청소년(unaccompanied youth-미동반 홈리스 청소년)*. 이는 부모/후견인/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이 없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D. *MKV 연락 담당자/리에존(MKV liaison)*은 노숙자/MKV 아동을 식별하고 등록하며, 모든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MKV 연락 담당자는 MKV 자격을 갖춘 학생, 부모/후견인/보호자, 교직원, 서비스 제공자, 옹호자 및 지역사회 기관에 연락 담당자의 임무를 알리고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는 추가 책임도 있습니다. 연락 담당자는 국제 입학 및 등록 부서(Interna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IAE Unit, 전화: 240-740-4511)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 *부모/후견인/보호자(Parent/guardian)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부모, 개인, 공공 복지 기관으로 MKV 인 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의 법적 또는 적법한 물리적 양육권 보유한 사람

2. 법원의 명령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의 후견을 받은 자 또는 그 공공기관

3.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는 미동반 노숙자 학생

## IV. 행정절차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및 관련 절차는 고정되고 정기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고 MCPS 에 등록할 자격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등록, 출석 또는 성공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즉시 등록

1. McKinney-Vento 자격을 갖춘 학생은 즉시 등록하여,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동반자가 없는 노숙자 청소년이 등록을 요청하는 학교로 적절한 교통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2.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이 MCPS 양식 560-24, *새 학생 정보(New Student Information)*를 작성할 때 공동 주택 항목에 표시를 할 경우, 학교/지정인은 학생이 고정적, 정기적, 적절한 야간 거주가 없는지 여부를 추가로 문의해야 합니다.

3.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이 학교 기록, 출생 증명서, 예방 접종 기록, 후견인/보호자 기록 등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할 수 없더라고 학교는 즉시 학생을 등록하고 해당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연락하여 관련 학업 및 기타 기록을 얻어야 합니다. 학교는 등록 전에 해당 기록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학교 등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a) 미동반 노숙 청소년의 경우, MKV 연락 담당자/지정인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이 즉시 등록하고 미동반 노숙 청소년이 원하는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이의 제기를 포함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학생은 등록을 신청한 학교에 계속 등록해야 하며, MCPS 를 통해 교통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5. MKV 자격을 갖춘 학생이 예방 접종 또는 예방 접종/의료 기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학 학교는 즉시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 청소년을 MKV 연락 담당자에 의뢰하여 필요한 예방 접종 또는 예방 접종/의료 기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 *McKinney-Vento 법*에 따른 권리

1. MCPS 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MCPS 학생의 부모/후견인/보호자가 가족에게 고정적이고 정규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거나 주택 손실로 학교를 고만두게 할 경우. 해당 학생은 MKV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 규정인 적용됩니다.

2. 미동반 노숙 청소년(Unaccompanied Homeless Youth)

   a) 등록기관 및 기타 등록 직원은 등록 양식을 검토하여 부모/후견인/보호자의 물리적 보호 하에 있지 않은 학생을 식별하고 해당 카운슬러 및 MKV 연락 담당자에게 학생이 등록하고 교육적 권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b) MKV 연락 담당자/지정인은 보호자가 없는 노숙 청소년의 등록,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 학점 이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MKV 연락 책임의 전체 목록은 IV.G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c) 카운슬러는 미동반 노숙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및 직업 준비를 준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d) 대학 준비를 담당하는 MKV 연락 담당자/지정인은 학교 카운슬러, 학생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s-PPW) 및 MCPS 직원은 모든 노숙 고등학생에게 대학 및 직업 준비, 대학 선택, 지원 절차(연방 재정 학자금 지원/Federal Application for Financial Student Aid 신청 포함) 및 가능한 학교 지원 가능성에 관한 정보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적 증명서와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연방, 주 및 *1965 년의 고 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을 포함한 기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독립적인 학생으로서의 신분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학생은 노숙자로 간주됩니다만,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McKinney-Vento 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자격은 IAE 디렉터의 결정에 따라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CPS 는 모든 노력이 합당하고 분별력과 민감성을 바탕으로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5. MKV 자격이 결정되면, 학생은 다음 학사연도 (즉, 여름 학기를 포함)가 시작될 때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그 때까지 학생의 MKV 상태를 검토하여 계속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C. 최고 관심사 결정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는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학생을 등록하려는 학교와 학군이 학생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소집됩니다. 최선의 관심사 결정 회의의 목적은 노숙자 교육을 위한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Homeless Education)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다루기 위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MKV 자격과 재학 중인 학교의 결정은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는 두 가지 별개의 결정입니다. 모든 경우에, 학생은 즉시 등록해야 하며, 자격 또는 등록 학교에 관한 모든 분쟁은 추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의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희망에 반하지 않는 한, 학생의 원래 학교(프리킨더가든-12 학년)에 계속 재학하도록 하는 것이 홈리스 학생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2. 등록 학교가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의 요청을 확인할 경우, 더 이상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화의 기록은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즉시 등록하기 위한 연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이 등록을 원하는 학교와 학군이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최선의 이익 결정이 소집됩니다:

   a) 위 섹션 IV.A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즉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b)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는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 및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4.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는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학교장/지명인이 소집해야 합니다.

5. 최고의 이익 결정 회의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의 경우, MCPS Form 335-77, *Homeless Status* 를 작성한 양육자

b) 적절한 경우, MKV- 자격이 되는 학생

c) 학교장/대리인

d) 학생지도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PPW)

e) 적절한 학교와 교육구 사무실 직원 및

f) MKV 연락 담당자 또는 IAE 대리인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

6.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학생의 성취, 교육, 건강, 안전에의 이동성의 영향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여 학생 중심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학생의 나이

b) 학생의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

c)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의 학생의 경험

d) 학생의 학업적 필요

e) 학생의 정서적 필요

f) 가족의 특별한 필요

g) 교습의 연속성

h) 현재 거주 형태인 기간

i) 가족의 미래 영구 거주지의 위치

j) 학사연도의 남은 기간

k) 통학 거리, 학생의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타 학생 중심의 교통 관련 요소

l) 학생의 안전

m) 원래 학교에서의 특수교육 여부

n) 원래 학교에서 받은 영어 개발 서비스

7. 장애의 존재가 학교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최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각 아동의 배정 결정은 부모/후견인/보호자와 학생을 잘 아는 사람, 평가 데이터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배치 옵션을 잘 아는 기타 사람들을 포함한 그룹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b) 이동성이 높은 노숙 아동은 종종 한 학교에 충분히 오래 머물지 못해 장애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선의 이익 평가는 노숙 아동이 진단되지 않은 장애를 가질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8. 학교는 *McKinney-Vento* 자격을 갖춘 학생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학교 환경에서 격리할 수 없습니다.

9. 부모/후견인/보호자와 별도로 살고 있는 MKV 적격 학생에게는 다른 MKV 적격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학교 선택 옵션이 제공됩니다.

10. 결정 회의의 일환으로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노숙자는 교직원과 함께 MCPS 양식 335-77, *McKinney-Vento 자격 및 최선의 결정(McKinney-Vento Eligibility and Best-Interest Determination)* 을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배정에 관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MCPS Form 335-77 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a)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동반되지 않은 노숙 청소년은 학교 배치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b)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노숙자 청소년이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에서 권장하는 학교 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지정인은 MCPS 양식 335-77A, *부모/후견인/*

*보호자/미동반 노숙자 청소년 편지(Parent/ Guardian/ Unaccompanied Homeless Youth Letter)*를 사용하여 부모/후견인/보호자,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에게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통역, 교육위원회 옴부즈맨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의 결정 및 액세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권리에 관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 배치 결정에 대한 설명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교가 제안 또는 거부한 결정의 설명

2) 제안되거나 거부된 사유

3) 학교에서 고려한 기타 옵션에 관한 설명

4) 다른 옵션이 거부된 이유

5) 사실, 증인, 근거한 증거 및 출처를 포함하여 적격성 또는 최선의 이익 결정과 관련된 정보 및 학교의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한 설명

6) 관련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일정

7) MKV 홈리스 연락 담당자 및 주정부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와 역할에 관한 간략한 설명

D. 비교 가능한 서비스

각 MKV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학생이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도보거리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학교와 인근 LEA 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적시 배치

2. Title I 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영어 언어 개발 프로그램과 서비스, Head Start(Early Head Start 포함), 조기 개입 서비스 및 MCPS 에서 관리하는 기타 모든 프리스쿨 프로그램

3. 방과 전과 방과 후 탁아서비스

4. 직업 및 준비 프로그램

5. 영재 및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6. 학교 영양 프로그램

E. 크레딧 및 활동에 대한 접근

1. 학교장/대리인은 교과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담당실 및 학교 지원 및 개선 담당실과 협의하여 MKV 자격을 갖춘 학생이 이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만족스럽게 완료한 전체 또는 부분 교과 과정에 대해 적절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의 예로는 이전 학교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모든 과정에 대한 학점 수여, 학교가 다른 학군 또는 주에 있더라도 해당 학교에서 학생의 교과 과정에 대해 학생의 이전 학교와 상담, 이전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완료한 학점, 제공된 학점 회복 과목을 포함한 비공식 또는 공식적 학생의 현재 평가가 포함됩니다.

2. MKV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또는 학교 후원 활동 참여를 완전히 금지할 경우, 학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벌금, 수수료 및 신청 또는 등록 마감일이 면제됩니다.

F. 기록

1. 각 MKV 자격을 갖춘 학생에 대해 예방접종 또는 의료기록, 학업기록, 출생증명서, 후견인 기록,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록은 학생이 새 학교나 새 교육구에 등록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MCPS 규정 JOA-RA, *학생 기록(Student Records)*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MKV 적격 학생의 생활 상황에 관한 정보는 인명록 정보로 간주하지 않으며, 학생 기록에 포함된 다른 인명록이 아닌 정보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G. MCPS *McKinney-Vento Act* 연락 책임

1. MCPS *McKinney-Vento Act* 연락 담당자/리에존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

a) 노숙 아동과 청소년을 식별하고 해당 학생이 MCPS 에 등록을 하고 MCPS 에서 성공할 수 있는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b) 무료/할인 급식을 신청합니다.

c) 홈리스 아동 및 가족을 의료, 치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및 주택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주선합니다.

d)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들이 직면했을 수 있는 근본적인 트라우마를 해결하여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e) IDEA 에 따른 개별 교육 계획 개발과 관련된 회의에서 보호자가 없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f) 학교 배치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g) 아래 섹션 G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숙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h) 지역사회의 홈리스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식별합니다.

i)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j)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합니다.

k)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관련 기회를 알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 학교,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가족 쉼터, 공공 도서관, 급식소를 포함하여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후견인/보호자가 자주

찾는 장소에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교육적 권리에 관한 공시를 배포합니다.

m)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미동반 청소년에게 원래 다니던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포함하여 모든 교통 서비스에 관해 완전히 알리고, 배정된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문제를 조정합니다.

n) Title I 행정과 협력하여 *McKinney-Vento 법*에서 요구하는 확보자금에 따라 Title I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o) 영어 교육 서비스인 ESOL 서비스, Head Start(Early Head Start 포함)를 포함하여 MKV 적격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주 코디네이터, 지역사회 기관 및 학교 직원과 조정 및 협력합니다.

p)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권리,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식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및 절차, 그리고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학교 직원, 서비스 제공자, 지지자, 부모/후견인/보호자 및 학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합니다. 그리고,

q) 청소년들; 주 노숙자 교육 코디네이터가 제공하는 전문성 개발에 참여합니다.

H. 자연 또는 인간이 만든 재해(인재)

1. 자연 재해 또는 인재로 인해 많은 가족이 한순간에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MKV 연락 담당자가 메릴랜드주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재해 또는 기타 재앙적인 사건으로 노숙자가 된 가족 및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MCPS 홈리스 코디네이터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재해가 발생하면 연락 담당자는 학교에서 많은 수의 집을 잃은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식별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할 추가 직원을 배치하여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연락 담당자는 피해 가족과 가족을 돕는 사람들에게 직접 MKV 적격 학생의 권리와 서비스를 홍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MKV 권리에 관한 포스터나 안내를 전시 및 배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 검토 및 이의 신청 절차

MCPS 는 노숙 생활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ode of Maryland 규정 13A.05.09.07 을 준수하는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분쟁 및 항소가 해결되는 동안, 학생은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자 노숙자 청소년이 요청한 학교에 등록하고 남아 있어야 하며(또는 "체류") MCPS 에서 적절한 음식 및 영양 서비스와 교통수단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이의제기

a)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IAE 디렉터에게 알려야 합니다.

b) 학부모/후견인, 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자 청소년으로부터 서면 불만을 접수한 후, MSDE 와의 MKV 노숙 연락 담당자인 IAE 디렉터는,

1) 요청을 검토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거나, 5 일 이내에 규정의 이전 시행을 유지합니다.

2) 항소 해결을 위해 교육감의 지정인인 Division of Appeals 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IAE 의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 청소년에게 제공합니다.

c)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자 노숙 청소년이 해결 방법에 만족하지 않거나 IAE 가 수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자 노숙 청소년은 달력일 기준으로 15 일 이내에 학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자 노숙 청소년은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교육감/지정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감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위원회-Board of Education)에 항소

   a)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 청소년으로부터 서면 불만 사항을 접수한 경우, 교육감/지정인은 수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b) 교육감/지정인이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은 교육 조항, §4-205(c), Annotated Code of Maryland 및 Board Policy BLB, *Rules of Procedure in Appeals and Hearings* 에 따라 이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를 30 일 이내 서면으로 교육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c) 위원회는 항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3. Maryland 주 교육위원회(주 위원회-Maryland)에의 이의제기

   a)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이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은 COMAR 13A.01.05 에 따라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 교육위원회에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J. 추가 자료

IAE 는 MCPS 에서 MKV 자격을 갖춘 학생의 식별 및 등록에 관한 학생, 부모/후견인/보호자 및 직원을 위한 지침을 정기적으로 유지 및 갱신해야 하며 이에는 주요 사무소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MKV 자격, 학생의 권리 및 등록 절차에 관한 MCPS 간행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IAE 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McKinney-Vento 자격을 갖춘 학생의 식별 및 등록 지침,* 및

2. Office of Shared Accountability 에서 관리 및 업데이트하고 MKV 자격을 갖춘 학생 등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MCPS 학생 기록 보관자 매뉴얼*

**관련 자료:** *Stewart B.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Subtitle B, amended by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P.L. 107-110), Title X, Part C, Subtitle B,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Title I, Part A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as amended through P.L. 114-95, enacted December 10, 2015; 42 USC §11434A(6);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4-205(c);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2.06, 13A.05.02.04, 13A.05.02.13, and 13A.05.09

*규정 변경사:* 새 규정 2002 년 8 월 28 일; 2003 년 9 월 16 일 갱신; 2010 년 5 월 27 일 갱신;2021 년 7 월 8 일 갱신, 2024 년 11 월 6 일 갱신

#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 |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 |
|---|---|
|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br>Office of District Operations<br>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br>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br>240-740-3215 ı SWC@mcpsmd.org |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br>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br>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br>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br>240-740-2888 ı DCI@mcpsmd.org |
|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
| Section 504 Coordinator<br>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br>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br>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br>240-740-3109 ı 504@mcpsmd.org | ADA Compliance Coordinator<br>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br>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br>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br>240-740-2888 ı DCI@mcpsmd.org |
|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 |
| Title IX Coordinator<br>Office of District Operations<br>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br>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br>240-740-3215 ı TitleIX@mcpsmd.org | |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시다.

2024년 7월